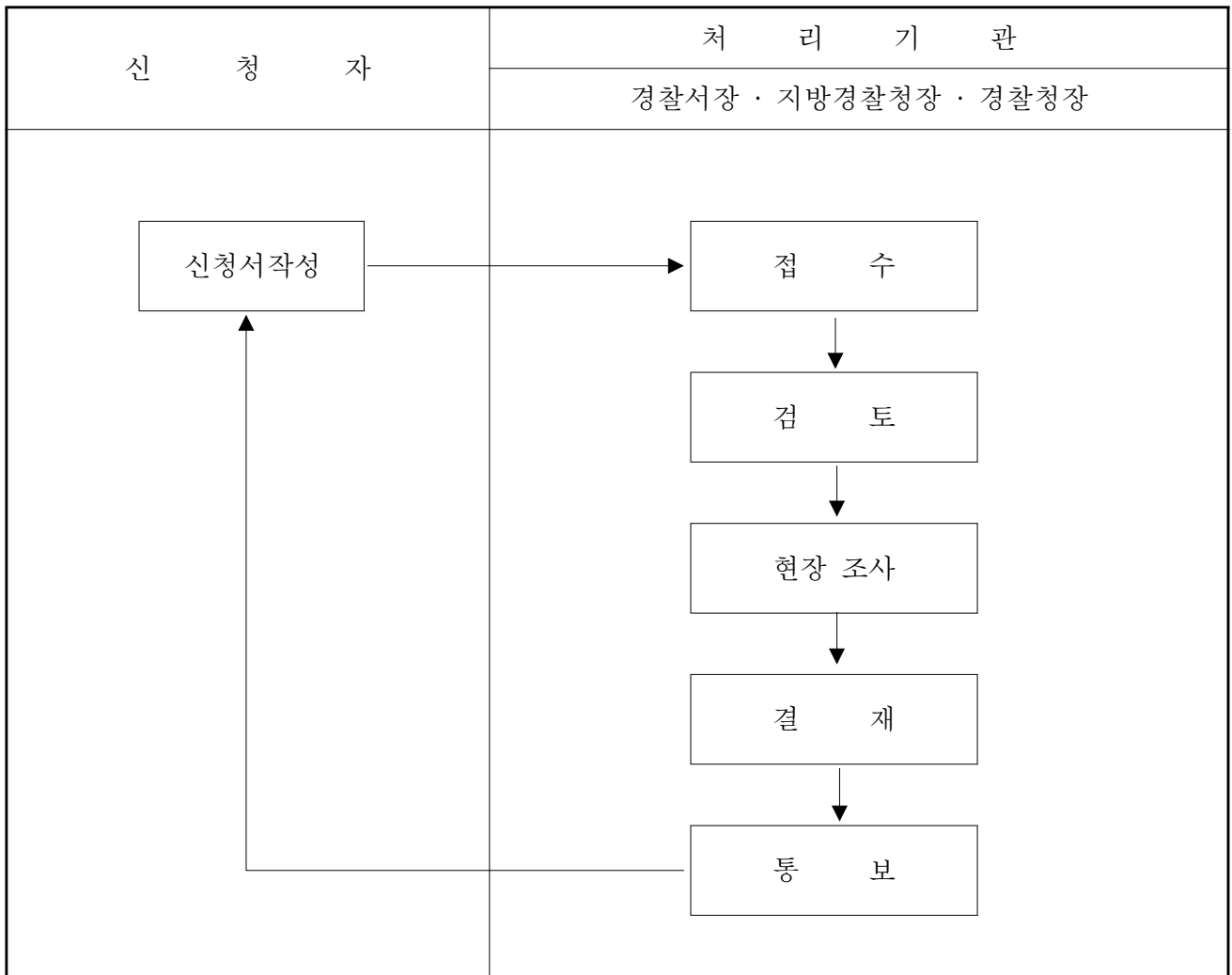


사행기구(제조업) 신규(조건부) 허가신청서		처리기간
		15일
신청인	①성 명	②주민등록번호
	③주 소	
④소재지		⑤전화번호
⑥영업의종류		⑦영업소명(상호)
⑧제조 또는 판매품목		
⑨영업설비의 개요		
⑩시설완료 예정일		
<p>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(제4항)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(제18조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규(조건부)허가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경찰청장 귀하</p>		
구비서류 1.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에 한한다) 각 1통 2. 건축물대장등본(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) 1통 3.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 1통 4. 시설 및 설비명세서 1부 5.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. 제조하고자 하는 사행기구의 품목·형상·구조·재질·성능·사용방법 및 당첨금의 시상율에 관한 서류 1부		수수료
		뒷면참조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뒷면)



수 수 료(영 제14조 관련)

구 분	영업의 허가	변경허가	승계신고
복표발행업 및 현상업	10만원	5만원	5만원
기타사행행위업	5만원	2만5천원	2만5천원
사행기구제조업	10만원	5만원	5만원
사행기구판매업	5만원	2만5천원	2만5천원